

제10897호

관 보

1988. 4. 1. (금요일)

고시 번호	신청자 또는 명칭	설 명	기 기 의 명 칭	기 기 의 형 식 명	형식검정 번호	형식검정 합격년월일	일련번호
208	광명전자 대표 정석순		BT-303S형 간이무선국용송수신 기	E02K 150-3G3E5-1	E84009	1984.11.6.	0135~0139
209	국제전자공업 주식회사		ELMO MC-2101형 VHF무선전화장치	V-I03K 216/223-10-6-1	V87079	1987.11.12.	0006~0007
210	"		KJ/PRC-3N형 VHF무선전화장치	V-03K 146/174-4.8-6-1	V86042	1986.7.15.	0413~0422
211	"		PC2211T형 VHF무선전화장치	V-I02K 216/223-2-4-1	V87050	1987.7.6.	0062~0067

공 고

◎교통부공고제 6 호

항공법 제34조에 의거 김포국제공항을 공공용 비행장으로 지정하였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.

1988년 4월 1일

교통부 장관

1. 비행장의 명칭 : 김포국제공항
2. 위치
 -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, 밤화동, 과해동, 새발산동, 오곡동, 오쇠동 일대
 - 표 점 : 위도 37°33'15" 경도 126°47'59"
 - 표점의 표고 : 해발 17m 70cm
3. 관리청 : 교통부 서울지방항공관리국 (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74번지)
4. 공고의 목적 : 김포국제공항 확장사업으로 신설된 활주로와 길이가 연장된 기존활주로의 범

위를 공고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설치를 통제하므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코자 함.

5. 착륙대

- 32L-14R 활주로의 착륙대는
 - 북위 37°32'38", 동경 126°47'58"의 지점과
 - 북위 37°33'34", 동경 126°46'23"의 지점과
 - 북위 37°32'45", 동경 126°48'07"의 지점과
 - 북위 37°34'01", 동경 126°46'31"의 지점으로
 구성되는 지표면상의 길이 3,320m 폭 300m 직사각형 평면임
- 32R-14L 활주로의 착륙대는
 - 북위 37°32'37", 동경 126°48'20"의 지점과
 - 북위 37°34'02", 동경 126°46'33"의 지점과
 - 북위 37°32'44", 동경 126°48'29"의 지점 및
 - 북위 37°34'09", 동경 126°46'42"의 지점으로
 구성되는 지표면상의 길이 3,720m 폭 300m 외 직사각형 평면임

6. 진입구역

구분	진입 구역	진입표면
14L	위도 37°34'02", 경도 126°46'33"의 지점과 위도 37°34'09", 경도 126°46'42"의 지점과 위도 37°40'45", 경도 126°40'34"의 지점 및 위도 37°38'55", 경도 126°38'15"의 지점으로 구성되 는 사다리꼴 평면	진입표면은 32L-14R 및 32R-14L 활주로 착륙대의 각 단면에서 비행장 외측 상방향으로 3,000m까지는 50 분의 1 구배로 3,000m에서 15,000 m까지는 40분의 1 구배로 진입구역
14R	위도 37°33'54", 경도 126°46'23"의 지점과 위도 37°34'01", 경도 126°46'23"의 지점과 위도 37°38'46", 경도 127°38'05"의 지점 및 위도 37°40'36", 경도 126°40'23"의 지점으로 구성되 는 사다리꼴 평면	범위내에서 구성하는 표면임 착륙대단 변표고 32L : 12.50m 14L : 11.43m 14R : 10.50m
32L	위도 37°26'02", 경도 126°54'05"의 지점과 위도 37°27'52", 경도 126°56'23"의 지점과 위도 37°32'45", 경도 126°48'07"의 지점 및 위도 37°32'38", 경도 126°47'58"의 지점으로 구성되 는 사다리꼴 평면	
32R	위도 37°25'49", 경도 126°06'59"의 지점과 위도 37°27'51", 경도 126°56'45"의 지점과 위도 37°32'44", 경도 126°48'29"의 지점 및 위도 37°32'37", 경도 126°48'20"의 지점으로 구성되 는 사다리꼴 평면	

제10897호

관 보

1988. 4. 1. (금요일)

7. 수평표면

북위 37°33'26", 동경 126°47'15" 해발고도 62m70cm의 지점을 포함하는 평면과 북위 37°33'23", 동경 126°47'31" 해발 고도 62m70cm의 지점을 포함하는 평면중 각각 그 지점에서 반경 4,000m로 그린 원주로 포위되는 부분

8. 전이표면

착륙대 장변으로부터 활주로 종방향과 직각 및 외측상방향으로 7분의 1 구배로 형성되는 표면중 해발고도 62m70cm까지의 표면과 자 진입 표면의 외측변으로부터 활주로 종방향에 직각 및 외측상방향으로 7분의 1 구배로 형성되는 표면중 해발고도 62m70cm까지의 표면

9. 항공보안시설

- 활주로 14L
O/M, M/M, I/M, G/P, LOC, 활주로 중심선등 활주로지점지대등, ALS
- 활주로 14R
상 동
- 활주로 32L
MALS, 활주로 중심선등, 활주로지점지대등

- 활주로 32R
활주로 14L과 동일(단, O/M 대신 DME)
- 기 타
ASR-8RADAR, ASDE, TVOR, RVR, PAPI

10. 포장강도

- 신활주로: PCN 100/F/C/W/T
- 구활주로: PCN 100/F/C/W/T

11. 공용개시일: 1988년 4월 1일

12. 기타 참고사항

- 진입구역등 항공용어: 항공법 제2조 참조
- 관련기관: 교통부 서울지방항공관리국
- 진입표면, 수평표면 및 전이표면등의 위에 나오는 장애되는 시설물은 항공법 40조에 의거 설치가 불가하며 장애어부는 서울시 강서구청, 경기도 부천시청 및 김포군청에서 확인할 수 있음.

◎조달청공고제26호

당청에서 각 수요기관에 공급할 1988년도 조달물자(승용차)에 대한 단가계약이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음을 공고한다.

1988년 4월 1일

조 달 청 장

단 가 계 약 체결 현황

순번	정부물품분류번호	품 명	규 격	단 위	공급가격(조달수수료불포함)	인도조건
1	2310-004-1051	르망 GLE 일반형	필수옵션포함	대	5,010,000	공장도

※ 별도 선택옵션만은 공급하지 않음.

◎공업진흥청공고제88-454호·제88-455호

한국공업규격표시품목지정및표시허가심사기준
공업표준화법 제15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한국공업규격 표시품목 지정 및 표시허가심사기준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한다.

1988년 4월 1일

공고번호	규격번호	표시 지정 품목		표시허가 심사기준 용
		규	격	
88-454	KS C 6502	마이크로폰	성	락
88-455	KS C 6408	교류전원용 알루미늄 박형전해 콘덴서	"	"

부 칙

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◎공업진흥청공고제88-458호

전기용품형식승인취소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3조(형식승인취소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기용품 형식승인취소하고 동법 제26조(공고)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88년 4월 1일

업체명및 대표자	소재지	품명	공업진흥청장 승인번호 및 규격		사 유
			승인번호	규격	
삼성전기 (김광수)	충남대덕 군신탄진 읍목상리 29	장식 용전 구	06-9-1054 (220V/8.5W)		전기용품 안전관리 법제24조 (개선명 령) 위반

부 칙

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